

제403회 정례회
'22. 9. 16.(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안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2년 9월 7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3. 제안사유

○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명확히 규정(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할 것 명시

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15명 이내로 구성(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마.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 간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안 제13조)

바. 운영세칙(안 제14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22.6.22.)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충청북도 사회복지보장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 및 개정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개정한 것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은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7개 시·도 중 15개소 조례에 반영 완료(충청북도, 전라남도 미반영)

- 본 조항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노력과 의지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 안 제9조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는 시·도지사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시행령 제4조의5(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는 지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위원회는 이를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내용적으로 적합함.
- 안 제14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을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현실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 함으로써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도지사의 책무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관련 조항
경기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강원도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0조(처우개선) ① 사회복지사 등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②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